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박영일 의원 등 8명

나. 의안번호 : 제 2680호

다. 제 안 일 : 2012. 11. 12.

라. 회 부 일 : 2012. 11. 20.

2. 제안 이유

- 의장·부의장 선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중 일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을 담고 있어 이를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7일전 18:00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6항)

-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2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7항)
- 방청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함.
(안 제79조제1항제3호)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박영일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께서 2012.11.12. 발의하여 2012. 11. 20.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7인 이상)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의안으로써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의안입니다.
- 또한, 본 개정 규칙안은 현행 의장 부의장 선거 시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후보등록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전 7일전 18:00 시까지 사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2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며
-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만 피선거권을 주는 선출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의장단 선거방식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여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 내재적 발전을 도모 하고자함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후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됩니다.

※ 경기도내 개정 시·군 현황

수원시(2012. 6.18), 광명시(2011. 6. 8), 시흥시(2006. 7.21) 안산시(2005. 5. 4), 안양시(2009. 2.13), 이천시(2008. 6.19) 의정부시(2010. 4.30), 화성시(2012. 6. 5)

- 또한, 안 제79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은 장애인의 의회 방청할 권리를 침해 할 소지가 있고 장애 비하 표현을 담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